
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

2020. 12.



법무부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체류관리과

1. 개정배경

- 출입국관리법 개정*으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리 규정에서 '출입국민원 대행기관' 일괄 제외 필요

* 법 제78조의2(각종 신청 등의 대행, '20.6.9.)의 시행규칙이 12.10. 시행예정

2. 주요 개정내용

- 대리허용 대리인 자격에서 대행기관 삭제(제2조의 별표)
 - 「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」에서 '출입국민원 대행기관'을 삭제
- ※ 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되더라도, 기존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가능

3. 시행일자 : 2020. 12. 10.(목)